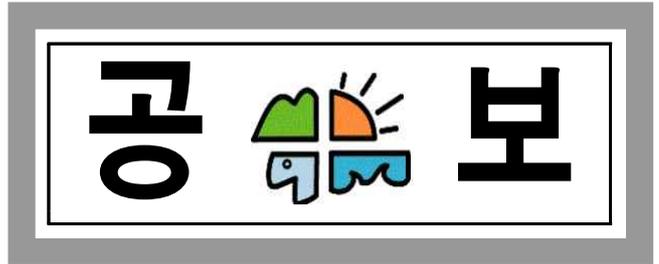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89호 2022년 5월 20일(금)

훈 령

- 속초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안 2

고 시

- 속초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1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1

공 고

- 임대사업자 부도등의 발생 사실 등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15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6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1
- 공인 신규등록 사항 공고 22

속초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5 월 20 일

속 초 시 장 김철수 인

속초시 훈령 제 770 호

속초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 및 부정한 녹취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취시스템”이란 행정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선택녹취”란 당사자에게 통화 중 통화 내용을 녹취 할 것을 공지한 후 행정전화기 녹취버튼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수녹취”란 당사자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 할 것을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5.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녹취시스템의 녹취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사업소, 의회사무과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녹취시스템의 설치장소는 속초시청 통신실로 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녹취시스템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녹취시스템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녹취시스템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팀장
3. 녹취시스템 관리자: 녹취시스템 업무담당자

제6조(녹취시스템 사용) 녹취시스템의 사용자는 선택녹취 또는 전수녹취 기능이 가능한 행정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녹취 시 사전고지) ① 녹취시스템 사용자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화상대자에게 녹취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녹취 고지는 녹음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녹취정보 열람 및 제공의 절차) ①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녹취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을 위해 문서로 요청받은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로 요청받은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재난 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녹취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녹취정보의 열람·제공을 신청한 부서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녹취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제출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녹취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녹취정보 관리) ① 녹취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60일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되도록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녹취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취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녹취시스템에 저장된 녹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라 제공된 녹취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녹취시스템 사용자가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사용부서의 녹취시스템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녹취자료 제공 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녹취자료 제공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누출시킨 사람
2. 업무와 상관없이 녹취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녹취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녹취정보를 관리 또는 열람, 제공 받았던 공무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녹취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취정보 인수·인계증

1. 녹취정보 내용

관리번호	녹취일시	행정전화번호	신청목적	녹취 파일 수	비고

2. 인수일자: 년 월 일

3. 서약 사항

- 본인은 녹취정보를 인수하면서 「속초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열람·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본 녹취정보는 신청목적을 달성 시 즉시 삭제·파기하고 그 결과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계자

-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녹취시스템 제공제한 통보서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부서명			
제한사유	<input type="checkbox"/> 녹취정보의 관리 소홀로 다른 사람에게 누출 <input type="checkbox"/>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으로 녹취정보를 취득하여 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속초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녹취시스템 제공을 제한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금의 결정)에 따라 속초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5. 20.

속 초 시 장

1. 시행일시 : 2022년 6월 2일 00:00 부터
2. 적용지역 : 속초시 전 지역
3. 적용대상 :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
4. 택시 운임·요금 변경내역(중형택시)

구 분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2km이하)		3,300원	3,800원
거리운임 (2km초과~4km이하)		133m당 100원	현행과 동일
시간운임 (15km/h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	현행과 동일
할증 운임	복합할증 (4km 초과 시)	133m당 160원	133m당 200원
	심야 (00시~04시)	20%	현행과 동일
호출 이용료(1회당)		1,000원	현행과 동일

5. 기타 문의 : 속초시청 교통과(033-639-236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금호동 622-4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 (주)화승디앤씨 대표 김민석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1101호(여의도동, 여의도파라곤)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2-40번지 외 244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1,700㎡ ○ 건축면적 : 12,402.9691㎡ ○ 연 면 적 : 152,879.6167㎡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층 수 : 지34층 / 지상 25층 ○ 세 대 수 : 925세대 	290,000,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3. 01. 01. ~ 2025. 08. 24.(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 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금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금호동 622-40번지 일원	-	증) 44,514	44,514	-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m ²)	결 정 사 유
신설	-	속초시 금호동 622-40번지 일원	44,514	◦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역내 면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4,514	-	44,514	10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36,788	-	36,788	82.60	-
준주거지역	7,726	-	7,726	17.40	-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공공·문화체육시설

3.1.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 설 운동장	체육시설	속초시 중앙동 506번지 일원	22,690	감) 42	22,648	1987.2.21 (강고 제87-12호)	

3.1.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 설 운동장	◦ 면적변경(22,690m ² → 22,648 m ²)	◦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및 보도· 도로 확장에 따른 폭원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3.2. 도로

3.2.1. 도로총괄표

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4	3,052	49,486	2	2,534	46,257				2	518	3,229
중로	1	2,021	41,051	1	2,021	41,051						
소로	3	1,031	8,435	1	513	5,206				2	518	3,229

■ 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3	2,746 (608)	51,340 (2,814)	2	2,536 (398)	48,778 (1,523)				1	210 (210)	2,562 (1,291)
중로	1	2,021 (130)	41,222 (279)	1	2,021 (130)	41,222 (279)						
소로	2	725 (478)	10,118 (2,535)	1	515 (268)	7,556 (1,244)				1	210 (210)	2,562 (1,291)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2.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75	10	국지 도로	513 (268)	중앙 506체 중로1-1	장사 산313-1유 중로3-19	일반 도로		1969.3.25 (강고 제69-2119호)	
변경	소로	1	75	10~17	국지 도로	515 (268)	중앙 506체 중로1-1	장사 산313-1유 중로3-1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3	6	국지 도로	220 (210)	중앙 509-9도 소로1-75	금호 628도 중로1-1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3	83	6~12	국지 도로	210 (210)	중앙 509-9도 소로1-75	금호 628도 중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9	6	보조 간선	298 (298)	중앙 506체 소로1-75	금호 622-363대 소로3-83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경	-	-	-	-	-	-	-	-	-	-	-	폐지
기정	중로	1	1	20	보조 간선	2,021 (130)	금호 624-1도 중로1-2	교동 784-81도 2호광장	일반 도로		1969.3.25 (강고 제69-2119호)	
변경	중로	1	1	20~23	보조 간선	2,021 (130)	금호 624-1도 중로1-2	교동 784-81도 2호광장	일반 도로			

※()는 구역내 연장임.

3.2.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75	소로1-75	연장(513m → 515m) 및 폭원(10m → 10~17m) 변경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3-83	소로3-83	연장(220m → 210m) 및 폭원(6m → 6~12m) 변경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및 폭원 변경
소로3-89	-	폐 지	사업계획구역 내 전체 편입으로 인하여 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 폐지
중로1-1	중로1-1	폭원변경(20m → 20~23m)	공동주택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신설	BL1	A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622-188번지 일원	41,700	공동주택
		B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2-259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510-3번지 일원	2,814	공공시설
합 계				44,514	

※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	금호동 622-40 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 주거지역	◦25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도면참조	
		색 채	◦도면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금호동 622-40 번지 일원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공 시 송 달 공 고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임대사업자 부도등의 발생 사실 등 통지를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2015. 8. 28.)되기전의 사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 부도등의 발생 사실 등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① 2. 공고기간 : 2022. 05. 20. ~ 2022. 06. 03. (14일간)
- ②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구 「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
5. 공시송달 대상

송달인	송달주소	내용	송달불능 사유
○○○동 ○○○호 임차인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1길 18, ○○○동 ○○○호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대광로제비앙 임대사업자 부도등의 발생에 따른 통지	폐문부재

6. 공시송달내용

-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로부터 우리시 관할의 공공건설임대주택(대광로제비앙아파트) 임대사업자 부도등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3조(부도발생의 신고)제3항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033-639-28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05. 20.

속 초 시 장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속 초 시 장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나.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325-14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14-47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742
- 다. 공고방법 : 속초시공보,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라. 공고기간 : 2022. 5. 20. ~ 6. 3. (14일)
- 마. 도로 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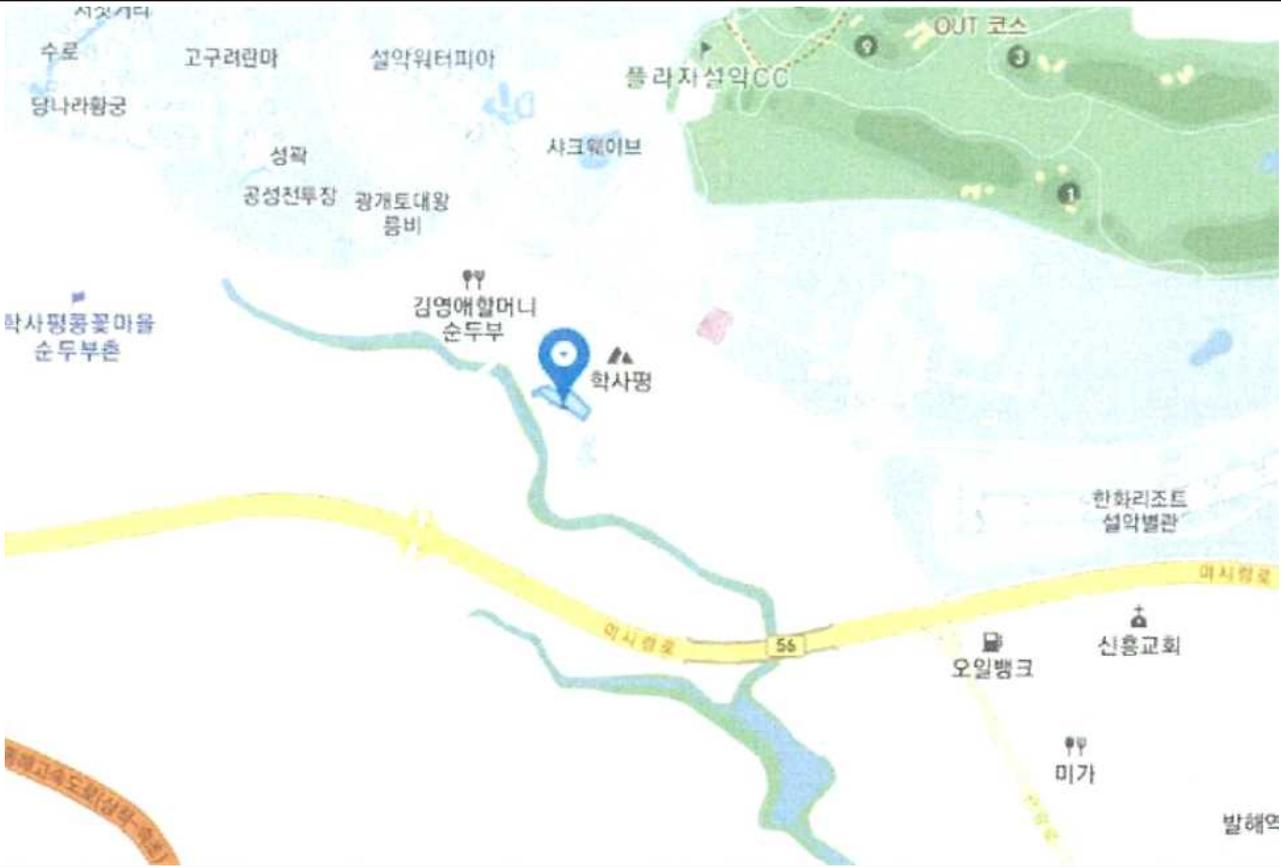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신고 수리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325-14	임야	760	5	김두영	속초시 노학동 1325-14 단독주택 2021-건축과-신축신고-39 (신고: 2021. 7. 19.)	건축주 : 김두영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14-47	대	107	4	고형민	속초시 조양동 614-47 단독주택 2022-건축과-신축허가-22 (허가: 2022. 4. 5.)	건축주 : 고형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742	대	331	8	최지애	속초시 조양동 742 외 1필지 (조양동 산 251-2) 단독주택 2022-건축과-신축신고-23 (신고: 2022. 5. 17.)	건축주 : 최지애
-------------------	-----	---	-----	---	-----	--------------------------------------------------------------------------------------	--------------

- 마.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바. 관계도서 :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사. 문의사항 :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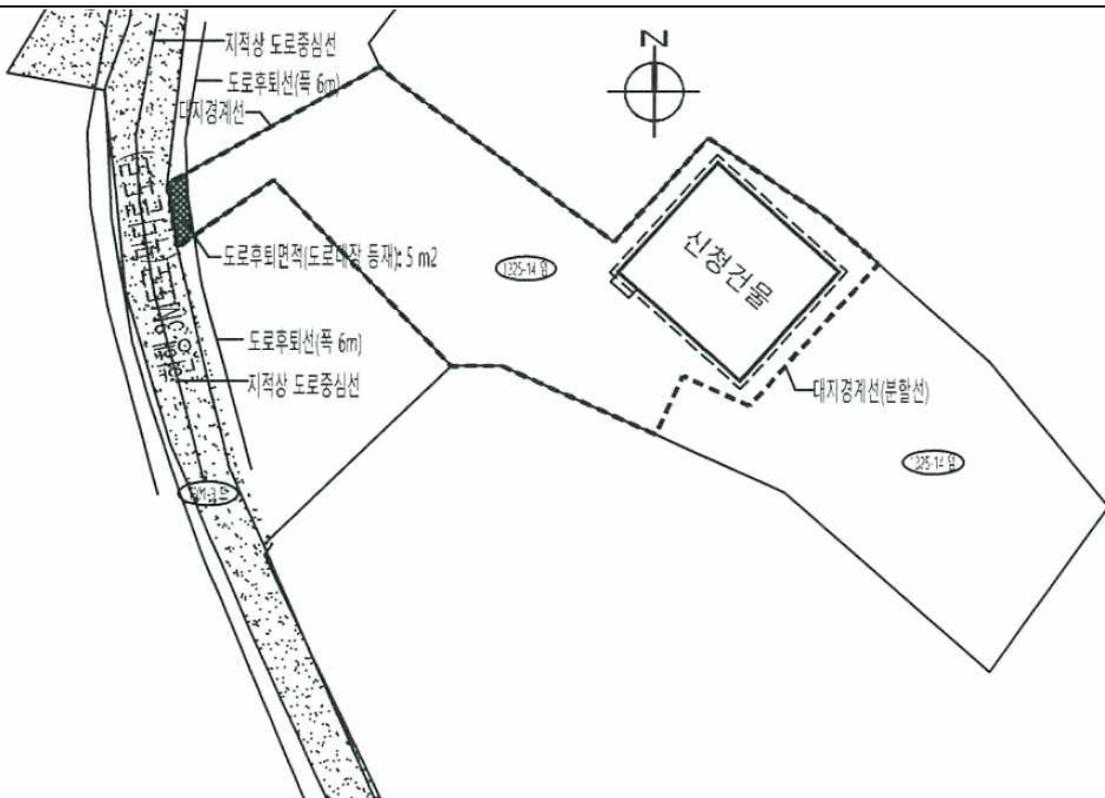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 치 도

축 척 NONE



도로 지정 현황도

축 척 NONE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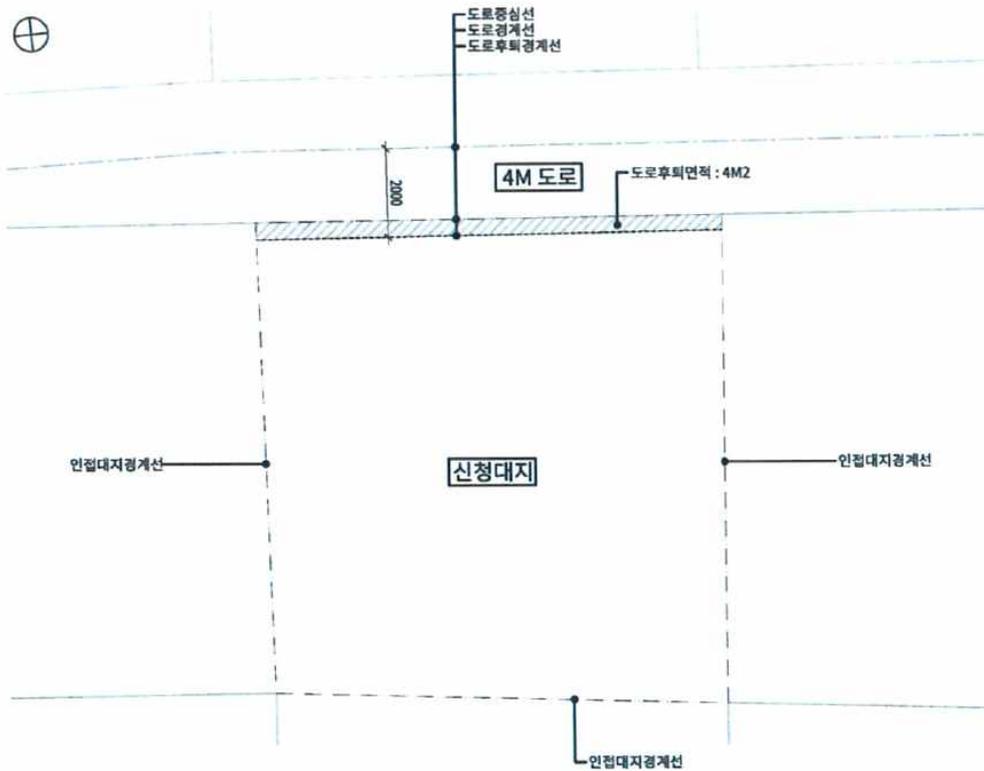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 치 도

축 척 NONE

구 분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M2)	신청 면적 (M2)
①	614-47	대	107.00	4.00



도로 지정 현황도

축 척 NONE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5. 20.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5. 20. ~ 2022. 06. 03.(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건축위치	관련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박인○	속초시 장사동 632-2 외 6필지	건축법 제11조제7항(건축허가)	건축허가 취소	이사불명 등

6. 유의사항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7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건축과(☎033-639-2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속 초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통합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공인 등록

2.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사용일 또는 폐기일 (최초사용일)	비고
신규 등록	속초시장인 금호동인증기전용		3.0×3.0cm	2022. 5. 23.	
신규 등록	금호동장인 금호동인증기전용2호		2.4×2.4cm	2022. 5. 23.	